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가단2059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이봄빛, 이종건

피고B

변론 종결2024. 9. 27.

판결 선고2024. 11.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3. 9.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10. 17. 접수 제126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조합은 2016. 12. 29. 주식회사 E에 합계 13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위 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20. 12. 17.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23. 10. 15. 기준 964,537,735원(원금 467,448,637원, 이자 495,089,098원)이다.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은 2023. 9.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10.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광열

별지